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9월 8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 진영

●대통령령 제31000호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,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1조의2(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)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
2.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
3.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
4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
 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 입찰 또는 일괄입찰
 - 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
6.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·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방시설공사업자”를 “공사업자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”를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부표 비고를 삭제한다.

비고

1.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.

2.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되,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소방시설공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17378호, 2020. 6. 9. 공포, 9. 10. 시행)됨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,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및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고,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9월 8일

국무총리 정 세 균

국무위원
산업통상
자원부장관 성 윤 모

●대통령령 제31001호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의 제목 “(위해성심사의 면제)”를 “(위해성심사의 면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(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여 수입·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.

- 1.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
- 2.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